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320

발의연월일: 2025. 2. 21.

발 의 자:정일영·정진욱·주철현

임호선 · 김문수 · 박해철

박용갑・남인순・서미화

김 윤・황정아・안도걸

송재봉 • 최민희 • 이훈기

임미애 · 권향엽 · 이광희

박홍근 • 이용선 의원

(2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(착륙유도장치)가 설치된 콘크리트 문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,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2조제8항, 제16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#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2조제8항 중 "운용을"을 "운용 및 이착륙장 사용을"로 한다. 제166조제1항제13호 중 "운용정지"를 "운용정지, 사용정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 ~ ⑦	제132조(항공안전 활동) ① ~ ⑦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또	8
는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	
중에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	
경우 항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	
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운항에	
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	
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국	
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항공기, 경량항공기 또는	
초경량비행장치의 운항 또는	
<u>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</u> 일시	<u>운용 및 이착</u>
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,	<u>륙장 사용을</u>
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또는	
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의	
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	
있다.	
⑨ (생 략)	⑨ (현행과 같음)
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	제166조(과태료) ①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	
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
부과한다.	

- 1. ~ 12. (생 략)
- 13. 제132조제8항에 따른 운항 정지, <u>운용정지</u> 또는 업무정 ---<u>운용정지, 사용정지</u>-----지를 따르지 아니한 자
- 14. · 15. (생략)
- ② ~ ⑦ (생 략)
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13. -----
- - 14. 15. (현행과 같음)
  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